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2명(5급 1명, 7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7. ~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 중 “2025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한시정원)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 조제1항에 따라 <u>2025년 6월 30</u> <u>일까지</u>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방부에 둔다. ② · ③ (생 략)	제30조(한시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12월 31</u> <u>일</u>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